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규정

제정 : 2017. 12. 08.

개정 : 2022. 07. 01.

담당 : 성과관리실(950-5550)

| | | | |
|-----------------|-------------|---------------|----------------------|
| ----- 목 차 ----- | | | |
| 제1조(목적) | 제2조(용어의 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주관 부서) |
| 제6조(조사계획 수립) | 제7조(조사 시행) | 제8조(조사 결과 분석) | 제9조(개선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 제10조(설문조사관리위원회) | |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성서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육과정 및 학교생활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통한 전반적인 개선을 위하여 실시되는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의 계획, 시행, 분석, 환류 및 관리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교육 수요자”는 본교의 교육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수요자로서 학생, 학부모, 졸업생, 산업체 등 본 대학교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를 말한다.
- ②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항목”이라함은 교육수요자가 본교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 학생지원, 교육환경, 행정서비스 등에 대하여 만족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를 말한다.
- ③ “조사 담당자”란 교육 수요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계획, 진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교 교육전반에 대한 수요자만족도 조사, 분석, 평가 및 개선활동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주관 부서) 교육수요자만족도 조사의 주관부서는 성과관리실로 하며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개정 22.07.01)

- 1.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계획 수립
- 2. 조사 진행 관리
- 3. 결과 분석
- 4. 환류 및 개선

제6조(조사계획 수립) ① 주관 부서의 장은 매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설문조사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조사를 실시한다.

② 조사 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1. 조사 목적
2. 조사 대상 및 기간
3. 조사 내용 및 방법
4. 결과 분석 방법
5. 결과의 활용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조(조사 시행) ① 주관부서는 계획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조사를 실시한다.

② 조사담당자는 서면조사, 온라인조사, 인터뷰 등 조사 목적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조사 결과 분석) ① 주관 부서는 조사 결과를 취합·분석하여 교내·외 평가 등 전반적인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자료화한다.

② 조사 결과는 SPSS, AMOS를 비롯한 각종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주관 부서는 조사결과에 대한 통계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설문조사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한다.

④ 설문조사 결과는 개선사항 도출을 위하여 관련부서에 환류한다.

제9조(개선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① 관련 부서는 조사 분석 결과를 확인하여 시정할 사항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개선안을 수립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한다.

② 주관부서는 개선안을 취합하여 성과관리위원회에 상정하고 성과관리위원회에서 개선안 심의 후 최종 개선계획을 확정하여 주관부서에 통보한다.(개정22.07.01)

③ 주관부서는 확정된 개선계획을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④ 관련 부서는 개선계획에 따라 실행 후 개선반영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주관부서는 개선반영 결과를 교육수요자에게 공지하여야 하고 이를 차년도 교육수요자만족도 설문조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설문조사관리위원회) ① 교육수요자만족도 조사의 타당성과 신뢰성확보를 위해 설문조사가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설문조사관리위원회는 성과관리위원회와 위원직을 겸하여 운영하고 교내 또는 교외 통계 전문가 1인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개정22.07.01)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설문조사 문항을 비롯한 설문조사 계획의 적절성 검토
2. 설문조사 분석 결과의 타당성 검토
3. 분석결과에 따른 개선안 도출의 타당성 검토
4. 기타 교육수요자만족도 설문조사 시행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대학 제 규정을 준용한다.(신설22.07.01)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12월 08일로부터 적용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